

제6호 의안 정관 개정(안) 승인의 건

- 의결주문: 정관 개정(안)을 승인해 주십시오.
- 관계조항: 정관 제33조 제1호, 제35조 제1호

※ 제33조(총회의 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
※ 제35조(합병·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
정관 개정사유

- 보건복지부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에 따른 주무부서의 권고 사항
- 상위법(협동조합기본법) 위배에 따른 개정
-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규약의 개정
- 조합의 미시행 사업에 대한 조항 삭제

참고

	정 관	규 약	규 정
의 결	총회 (과반수 출석, 2/3이상 찬성)	총회 (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)	이사회 (과반수 출석, 과반수 찬성)
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(보건복지부장관) 인가		
내 용	목적, 명칭, 조직, 운영, 사업,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	정관 이외의 조직, 사업에 관한 사항	정관, 규약 이외의 경미한 사항
예 시	표준정관(예시)	총회운영, 출자금감소, 배당, 현물출자 등	이사회 운영, 감사, 직원보수, 선거관리 등

정관개정(안) 신규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(법동)에 둔다.</p> <p>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(탄방동)에 둔다.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, 1층(법동) 2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, 2층(법동) 3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8, 2층(법동) 4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: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, 2층(탄방동) 	<p>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(법동)에 둔다.</p> <p>② <삭제, 2020. 05. 09></p> <p>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, 1층, 2층(법동) <개정, 2020. 05. 09> 2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, 2층(법동) 3.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: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8, 2층(법동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둔산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조항 삭제 • 민들레의원 소재지의 층수 추가
<p>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비자조합원 :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	<p>제10조(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)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비자조합원 : <u>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</u> <개정, 2020. 05. 09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어 변경 <p>(보건복지부 권고 사항)</p>
<p>제14조(탈퇴)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. 사망한 경우 3. 파산한 경우 4.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	<p>제14조(탈퇴)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</p> <p>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. 사망한 경우 3. <삭제, 2020. 05. 09> 4. 피성년후견, 피한정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<개정, 2020. 05. 09> 5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항 삭제 • 용어 변경 <p>(보건복지부 권고 사항)</p>
<p>제16조(탈퇴·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</p>	<p>제16조(탈퇴·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사회 승인 단서 조항 삭제, 협동조합기본법 위배.

<p>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. <u>다만,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 먼저 지급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.</u></p>	<p>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. <개정, 2020. 05. 09></p>	<p>(보건복지부 권고 사항)</p>
<p>제18조(출자)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,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,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1.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<u>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	<p>제18조(출자)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,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,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자좌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 <개정, 2020. 05. 09> 1.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<u>⑤ <삭제, 2020. 05. 09></u></p>	<p>• 단서 조항 자구 수정.</p>
<p>제45조(임원의 정수)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45조(임원의 정수)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, 2020. 05. 09></p>	<p>• 감사 정수 수정. (보건복지부 권고 사항)</p>
<p>제50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제50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. <개정, 2020. 05. 09></p>	<p>• 임원 임기의 명확화</p>
<p>제58조(운영의 공개)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. 1. 정관, 규약, 규정 2. 사업결산보고서 3.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. 사업결과보고서(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) 5.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</p>	<p>제58조(운영의 공개)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. 1. 정관, 규약, 규정 2. 사업결산보고서 3. 총회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. 사업결과보고서(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) 5. <삭제, 2020. 05. 09></p>	<p>• 6항 5호 삭제. 사업미실시에 대한 조항 삭제.</p>
<p>제61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</p>	<p>제61조(사업의 종류)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</p>	<p>• 사업의 종류에 자원봉사활동 사업 조항 추가.</p>

<p>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</p> <p>가. 의료시설, 요양시설, 보육시설, 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시설, 사회복지시설, 건강증진시설</p> <p>나.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</p> <p>다.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</p> <p>라.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</p> <p>마.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사업</p> <p>바.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</p> <p>사.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</p>	<p>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</p> <p>가. 의료시설, 요양시설, 보육시설, 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시설, 사회복지시설, 건강증진시설</p> <p>나.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</p> <p>다.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</p> <p>라.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</p> <p>마.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 사업</p> <p>바.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</p> <p>사.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</p> <p>아.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<신설, 2020. 05. 09></p>	<p>(보건복지부 권고 사항)</p>
<p>제62조(사업의 이용)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</p> <p>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</p> <p>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</p> <p>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</p> <p>5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</p> <p>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</p> <p>7.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</p> <p>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</p>	<p>제62조(사업의 이용) ①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</p> <p>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</p> <p>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</p> <p>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</p> <p>5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</p> <p>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</p> <p>7.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</p> <p>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</p> <p>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. <신설, 2020. 05. 09></p>	<p>• 사업의 총공급고 산정 기준 조항 추가.</p> <p>(보건복지부 권고 사항)</p>